

[일련번호 : 11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보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미이행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■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■■■■과는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르면,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 지정을 받아야 한다. 또한 지정받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. 아울러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이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러한 상태의 자동차 또한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같은 법 제84조(과태료) 및 같은 법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다만 미성년의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(과태료 감경)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▣▣▣▣과는 2024년 자동차관리법 위반(이륜차 무등록, 번호판 가림 등)으로 사법기관(경찰서 등)의 적발 통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총 10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, 타 기관 재이첩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.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▣▣▣▣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#### ▣▣▣▣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